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409 제출연월일: 2024. 11. 11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수입업의 신고) ①・② (생	제9조(수입업의 신고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시・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	<u><</u> 삭 제>
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	
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	
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	
<u>하여야 한다.</u>	
④ 시·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	<u><삭 제></u>
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	
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	
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	
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	
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
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	
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	
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	
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